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02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소병훈 · 박지원 · 김문수
이춘석 · 조계원 · 박상혁
박 정 · 윤준병 · 장종태
강준현 · 서영석 · 안태준
안호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폐교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관련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폐교를 교육,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의 공익적 사업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

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상양여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여된 폐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를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무상양여에 관한 특례)</u> <u>① 시·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여된 폐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를 정하여야 한다.</u>